



# 2003시행 상속세및증여세법령 개정내용 해설

전 재 원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행정사무관

## I. 머리말

최근에는 자산소득에 대한 부의 무상이전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 각층으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 관련 제도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 사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유형별 포괄과세의 종류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대한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한다.

## II. 고액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 1.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 증여의제

#### 가. 개정내용 및 이유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주식 취득후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명의를 신탁한 경우와 같으므로 명의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유형에 추가하여 과세를 강화하였다.

다만,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자가 양도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를 통하여 권리변동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였다

###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2. 결손법인등을 이용한 이익 제공에 대한 과세 강화

### 가. 개정내용 및 취지

직전 5년 이내의 사업연도중 2년 이상 계속 결손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증여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에는 직전 5년 내의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과 상계가 가능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보완하였다.

###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보험금 증여의제 과세강화

### 가. 개정내용 및 취지

종전까지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관련 증여의제 대상에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었다.

금년부터는 보험금 수취인이 자금 등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

는 경우에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월보험료 등을 보험계약기간내에 증여 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유형을 신설하였다. 여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보험금에서 월보험료 등 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 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4.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대상 확대

#### 가. 개정내용 및 취지

지난해까지는 일반적인 증여의제 유형으로 다음의 7종류를 규정하고 있었다.

- 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 ② 보험금
- ③ 고·저가 양도
- ④ 채무면제이익
- ⑤ 토지무상사용
- ⑥ 명의신탁
- ⑦ 무상금전대부

금년부터는 ① 내지 ⑦과 유사한 거래 또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는 등 법령에 열거된 과세요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전면 확대하여 변칙 상속·증여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5.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축소

### 가. 개정내용 및 취지

종전까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공제액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자산소득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하여 인위적인 소득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였다.

이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종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조정하였다.

###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2.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강화등

### 가. 개정내용 및 취지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다. 다만, 수증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에게 수탁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고 수탁자가 영리법인인 점을 이용한 증여세회피사례도 방지하게 되었다. 이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이며 외환거래 자유화폭이 커진 점을 감안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증여거래에 대해서도 조세채권확보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여자에게 신고의무 및 연대납세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Ⅲ. 재산평가방법 개선

#### 1. 선박·항공기등 평가방법 개선

##### 가. 개정내용

종전에는 선박·항공기·건설기계·입목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재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재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개정이유

시가표준액의 경우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처분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인 재취득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무상 재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 상품·기계장치 평가방법 개선

##### 가. 개정내용

상품·기계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재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실무상 당해 재산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였다.

**3.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개선**

가. 개정내용 및 취지

종전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또는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은 다음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였다.

- ①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②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또는 전세금

금년부터는 당해 재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담보권 행사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범위에 대한 해석적 규정을 신설하였다.

첫째, 채권최고액(채권자가 담보물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다.

둘째, 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적담보외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보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한다.

셋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등)은 법인세법상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V. 납세자의 과도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납세편의 제고**

**1. 피상속인의 사전처분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가. 개정내용 및 취지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전에 보유재산의 처분을 통한 상속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

여 사망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재산의 종류별[①예금·유가증권등 ②부동산등 ③기타(골프회원권등)]로 2억원(2년 이내 처분재산인 경우는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인에게 사용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 경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처분재산가액의 20%상당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나, 많을 경우에는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전액을 과세하였다.

금년부터는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처분재산가액의 20%상당액과 2억원보다 많을 경우에도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과세토록 개정하였다.

이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용처 미소명 기준금액 초과여부에 따른 과세불형평 문제(문턱효과 제거)를 시정하기 위함이다.

####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 가. 개정내용

종전에는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수증자에게는 당해 재산취득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금년부터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인증여로 보아 상속세만 과세토록 하였다.

### 나. 개정이유

상속인 입장에서는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고 상속개시후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도 않아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와 동일하게 수증자에게 상속세만 과세한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배우자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배우자상속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 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30억원)로 함</li> <li>▪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의 유증재산)×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 배 우자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li> <li>○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상속세신 고기한까지 배우자명의로 등기등을 하 여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산방법 개선</li> <li>▪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의 유증재산)×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 배 우자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에 대 한 과세표준</li> <li>○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 으로부터 6월)까지 등기등을 한 경우에 는 배우자 상속재산에 포함</li> </ul>

나. 개정이유

증여재산공제액 상당액이 다시 상속세로 과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이 필수적이나 우리의 상속관행상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부터 6월)내 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분할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허용하였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제도 개선**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미달신고된 재산의 성격에 불문하고 아래 산식에 의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액 계산</p> <p>○ 미달세액×20%</p> <p>* 미달세액 =</p> $\text{미달한 과세표준 산출세액} \times \frac{\text{결정한 과세표준}}{\text{결정한 과세표준}}$	<p>□ 미달신고된 재산의 성격에 따라 가산세율 차등적용</p> <p>○ 상속재산 누락분 : 20%</p> <p>○ 합산신고 누락분 : 20%→ 10%</p>

나. 개정이유

단순 합산누락분에 대하여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였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5. 증여세 연부연납 범위 확대

###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세무서장은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부여시 그 사유, 납부세액 및 기한등을 증여자에게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p> <p>○ 이 경우 증여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 불허</p> <p>* 연부연납 신청기한</p> <p>- 자진납부세액 : 자진납부신고 기한 (증여후 3월내)</p> <p>- 고지세액 : 고지서상 납부기한</p>	<p>○ 연부연납 허용</p> <p>- 신청기한 :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p>

### 나. 개정이유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납부하는 증여세에 대하여도 수증자가 납부하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연부연납을 허용하여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였다.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였다.

## 6. 물납대상 재산의 범위 확대

###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물납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li> <li>- 다만, 상장 및 협회등록주식은 제외하되, 상속·증여재산이 전액 상장·협회등록주식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해 당해 주식의 물납 허용</li> </ul> <input type="checkbox"/>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 물납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권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li> <li>○ 물납재산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li> <li>○ 묘지가 있는 토지등</li> </ul> <p>* 물납요건 : 부동산·유가증권가액이 상속·증여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p>	<input type="checkbox"/> 물납대상 유가증권에 다음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되거나 협회등록된 대주주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된 주식</li> </ul> <input type="checkbox"/>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다음을 추가하되 상속·증여재산이 당해 물건 밖에 없는 경우 예외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허가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li> <li>○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li> <li>○ 상장·등록이 폐지된 주식</li> </ul>

### 나. 개정이유

최초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한 법인의 대주주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상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주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였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처분이 어렵고, 상장·협회등록주식으로서 상장·등록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자체 상속·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물납을 거부하되, 상속·증여재산이 당해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하였다.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7. 신고기한내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비과세

###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상속인별 상속재산이 등기등에 의하여 확정된 후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초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p> <p>○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li> <li>-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법정지분등기되었다가 재분할하는 경우</li> </ul>	<p>○ 예외 인정사유에 다음을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재분할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재정경제부 재산46014-308, '01.12.28)</li> <li>- 신고기한내 법정지분 등기후 물납신청하였으나 물납불허로 인하여 다른 재산으로 물납변경 신청을 하고 당초 물납신청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li> </ul>

### 나. 개정이유

상속재산의 분할을 등기등에 의하여 확정된 후 상속세 신고기한내 재분할함으로써 지분이 증감되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예규로 운영하던 것과 물납재산 변경의 경우 재분할이 부득이 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상속세 신고기한내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물납재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003.1.1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 8. 부담부증여 요건 명확화

###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채무부담 조건으로 재산증여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가액임  ○ 채무의 범위 -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 채무의 범위에 다음을 추가 - 임대에 공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나. 개정이유

수증재산의 담보여부에 관계없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사실상 증여자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나 일반채무에 까지 확대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당해 재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추가하였다.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9. 등록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허용

###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와 보호구역내 토지에 대해 상속세 징수유예 ○ 사후관리 : 상속인이 당해 문화재자료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징수유예받은 상속세 추징	<input type="checkbox"/>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징수유예 허용 ○ 사후관리 : 문화재자료와 동일

나. 개정이유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문화재중 문화재자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여기에서 등록문화재란 보존가치가 있는 조형물 또는 건조물로서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외형은 보존하되 내부용도는 시·군·구 신고에 의해 자유로이 개조할 수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V. 기타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방법 개선**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상속개시 후 10년이내에 재 상속되는 경우 다음의 세액 공제</p> <p>전의 상속세산출세액</p> $\times \frac{\text{재상속분의 재산가액} \times \frac{\text{전의 상속세과세가액}}{\text{전의 상속재산가액}}}{\text{전의 상속세과세가액}} \times \text{공제율}$ <p>* 공제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내 재 상속 : 100%</li> <li>▪ 1년초과 2년내 재 상속 : 90%</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9년초과 10년내 재 상속 : 10%</li> </ul>	<p><input type="checkbox"/>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임을 명문화</p>

나. 개정이유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재상속과세가액 비율이 높아져 공제세액이 커지게 되는 것을 이용하려는 납세자와 상속세액을 고유재산 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관청간의 마찰소지를 해소하였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공제한도 적용방법 개선**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증여재산(과표)</li> <li>- 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공제한도액 계산 방법 개선</li> <li>-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li> </ul>

나. 개정이유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외의 자가 상속받는 경우와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등을 받는 경우간 공제액을 일치시켜 세부담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방법 보완**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고세액공제방법  ○ 신고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 10%  * 산출세액의 범위(통칙69-0...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 신고세액 공제액 산정시 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명문화

나. 개정이유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의 범위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수정신고분에 대한 공제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을 방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6. 소득세 및 증여세 이중과세 조정**

가. 개정내용 및 취지

종전까지는 동일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동시에 과세되

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으로 소득세만 과세하였다.

금년부터는 농민이 작물재배와 관련하여 경작지원 단체로부터 받는 복합비료 대금, 경작 자재대등 보조금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제외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7.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

#### 가. 개정내용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가. 토지무상사용의 5가지 유형(2002년까지 법령에 열거된 규정)

- ① 건물을 신·증축한 경우
- ②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매입한 경우
- ③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자와 함께 토지·건물을 각각 매입하여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 ④ 상속재산인 토지를 건물상속자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 ⑤ 유상으로 사용하다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2003년부터는 위 ① 내지 ⑤의 토지무상사용 유형에 다음을 추가하였다.

- ① 토지·건물소유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증여 또는 양도하고 증여자 또는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 ② 토지·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가 건물을 증여받고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 ③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지난해까지는 토지무상사용기간(5년)중 당해 토지를 양도·상속·증여한 경우 또는 건물이 멸실되거나 유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

었다. 다만,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금년부터 토지소유자에게는 소득세(부당행위계산부인)를 과세하고, 토지무상사용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규정하되, 토지무상사용기간중 당해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월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①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② 건물이 멸실된 경우
- ③ 건물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 ④ 상기와 유사한 경우로서 토지무상사용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나. 개정이유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열거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추가(유형별포괄주의 확대)하였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무상사용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과세물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등에는 당해 사유발생일부터 3월내에는 경정청구를 허용하였다.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8.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방법 조정

#### 가. 개정내용 및 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10%, 1년이 경과후에는 미납일수×(3÷10,000)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미납일 수의 계산에 있어 종전까지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전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납부기한의 다음날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미납일수 계산방법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로 조정하였다.

####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9.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관련 첨부서류 제출제도 개선

#### 가. 개정내용

다음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전자송신방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송신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 영농상속신고서(2호서식) → 농지·초지등의 등기부등본
- 상속재산분할신고서(3호서식) → 피상속인 및 상속인 호적등본
-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9호서식)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10호서식) →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
-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 허가신청서(11호서식)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상속·증여세물납(변경) 허가신청서(13호서식)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나. 개정이유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서 호적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을 납세자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기관을 통하여 직접 세무관서에 전자송신을 요청할 수 있는 전자송신방법에 의한 서류제출 근거를 마련하였다.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1.1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